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발의연월일 : 2025. 12. 12.

발 의 자 : 강준현 의원

찬 성 자 : 36인

수정이유

은행이 대출금리 산정 시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를 대출금리 산정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관련 내용을 추가하고, 이를 위반한 은행을 벌칙으로 제재하는 대신 연 2회 이상 의무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 통제기준을 강화하도록 수정함.

수정주요내용

가.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함에 있어 반영하여서는 아니 되는 항목에 교육세를 추가하고, 출연금 관련 조문을 정비함(안 제30조의3제1항 제4호 및 제2항).

나. 은행이 대출금리 반영 금지 항목의 준수 여부를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도록 하며, 이를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30조의3제3항 및 제4항 신설).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0조의3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세. 다만,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

② 은행은 대출금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연금의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술보증기금법」 제13조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출연금

2.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4조에 따른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3. 「신용보증기금법」 제6조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4.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출연금

5.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6조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금

③ 은행은 제1항과 제2항의 준수 여부를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④ 은행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대출금리 반영 금지 의무와 제3항

에 따른 점검 및 기록·관리 의무를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여야 한다.

안 제68조를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8호까지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u><신설></u>	<u>제30조의3(대출금리의 산정) ① 은행은 대출금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목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u> 1. <u>제30조제1항에 따른 지급준비금</u> 2. <u>「예금자보호법」 제30조에 따른 보험료</u> 3. <u>「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u> 4. <u>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연금</u>	제30조의3(대출금리의 산정) ① ----- ----- ----- ----- ----- --. 1. (개정안과 같음) 2. (개정안과 같음) 3. (개정안과 같음) 4. <u>「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세. 다만,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는 금액에</u>

한정한다.

가. 「기술보증
기금법」 제1
3조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출연금

나. 「농림수산
업자 신용보
증법」 제4조
에 따른 농림
수산업자 신
용 보증 기 금
출연금

다. 「신용보증
기금법」 제6
조에 따른 신
용 보증 기 금
출연금

라. 「지역신용
보증재단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지역신
용 보증 재 단
및 신용보증
재단 중앙 회
출연금

다. 「한국주택
금융공사법」
제56조에 따
른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② 제1항에도 불구
하고 은행은 제1항
제4호 각 목의 법
률에 따라 보증을
받은 대출의 대출
금리에 해당 법률
에 따른 출연 요율
의 50% 이하의 범
위에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비율 이
상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은행은 대출금
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출연금의 100
분의 50 이하의 범
위에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비율 이
상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술보증기금
법」 제13조에
따른 기술보증기
금 출연금

2.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
4조에 따른 농림
수산업자 신용보
증기금 출연금

3. 「신용보증기금
법」 제6조에 따

른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4. 「지역신용보증
재단법」 제7조
제3항에 따른 지
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출연금

5. 「한국주택금융
공사법」 제56조
에 따른 주택금
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금

<신 설>

③ 은행은 제1항과
제2항의 준수 여부
를 연 2회 이상 점
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은행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대출
금리 반영 금지 의
무와 제3항에 따른
점검 및 기록·관
리 의무를 내부통
제기준에 반영하여

[illegible]

<u>2.</u> ~ <u>8.</u> (생략)	<u>반영한 경우</u> <u>3.</u> ~ <u>9.</u> (현행 제2호부터 제8호까지와 같음)	<u>2.</u> ~ <u>8.</u> (현행과 같음)
----------------------------	---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3(대출금리의 산정) ① 은행은 대출금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목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급준비금
2. 「예금자보호법」 제30조에 따른 보험료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4.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세. 다만,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

② 은행은 대출금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연금의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술보증기금법」 제13조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출연금
2.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4조에 따른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3. 「신용보증기금법」 제6조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4.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출연금
 5.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6조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금
- ③ 은행은 제1항과 제2항의 준수 여부를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④ 은행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대출금리 반영 금지 의무와 제3항에 따른 점검 및 기록·관리 의무를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여야 한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대출금리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대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30조의3(대출금리의 산정) ①</u> <u>은행은 대출금리에 다음 각 호</u> <u>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목</u> <u>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u> 1. <u>제30조제1항에 따른 지급준</u> <u>비금</u> 2. <u>「예금자보호법」 제30조에</u> <u>따른 보험료</u> 3. <u>「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u> <u>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u> <u>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u> 4. <u>「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u> <u>호에 따른 교육세. 다만, 과세</u> <u>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1천</u> <u>분의 5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u> <u>정한다.</u> ② <u>은행은 대출금리에 다음 각</u> <u>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u> <u>연금의 100분의 50 이하의 범</u> <u>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u> <u>비율 이상을 반영하여서는 아</u> <u>니 된다.</u> 1. <u>「기술보증기금법」 제13조</u>

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출연금

2.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4조에 따른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3. 「신용보증기금법」 제6조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4.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출연금

5.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6조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금

③ 은행은 제1항과 제2항의 준수 여부를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④ 은행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대출금리 반영 금지 의무와 제3항에 따른 점검 및 기록·관리 의무를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여야 한다.